

논문심사규정

(1996년 12월 12일 제정)
 (2002년 01월 28일 개정)
 (2002년 09월 01일 개정)
 (2004년 06월 21일 개정)
 (2008년 01월 01일 개정)
 (2011년 08월 01일 개정)
 (2011년 12월 01일 개정)
 (2013년 01월 01일 개정)
 (2017년 01월 01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한국물환경학회'에 투고된 원고가 학회지에 게재되기에 적절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사를 수행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초기 심사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원고를 심사하여 전문가 심사를 진행할 것인지 결정한다. 초기심사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투고 논문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투고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수정요청을 받은 투고자가 소정기간 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논문수정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한다.

- ① 학회지의 목적과 범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② 원고의 분량, 구성 및 내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③ 학회지의 투고규정 및 양식에 어긋나는 경우

제3조. 전문심사위원 위촉

1. 전문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2. 초기심사를 거친 원고에 대해 해당분야 심사위원 3인이 심사한다.

제4조. 심사 내용

심사위원은 원고가 그 해당분야에서 적절한 수준인가를 다음과 같은 독창성, 타당성, 완성도,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1. 독창성

원고가 이미 발표된 내용 또는 기지의 사실이 아닌 것으로서 다음 사항 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는가를 심사한다.

- ① 주제, 내용, 방법에 독창적인 것.
- ② 학계, 사회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 ③ 현상의 해명에 큰 공헌을 하는 것.
- ④ 창의성이 큰 계획, 설계, 공사 등에 있어서 귀중한 기술적 검토, 경험이 제시되는 것.
- ⑤ 시기 적절한 주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견해를 제시한 것.

2. 타당성

원고내용에 오류가 없고,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한 내용인가를 다음 사항을 참고로 하여 심사한다.

- ① 중요한 문헌이 빠짐없이 인용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는가?

② 기존의 기술 및 연구성과와 비교·평가하여 적절한 결론이 이루어졌는가?

③ 실험 및 해석의 조건이 명확하게 기술되었는가?

3. 완성도

원고가 '논문투고규정'의 규정에 따라 정확, 간결하게 기술되어 있는가를 심사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① 전체구성의 적절성

② 목적과 결과의 명확성

③ 기존 연구, 기술과의 관련성

④ 문장표현의 적절성

⑤ 도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

4. 활용성

내용이 학문적 또는 실용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사항중 하나 이상을 충족시키는가를 심사한다.

① 주제 및 내용이 시기에 적절한가?

② 연구, 기술 성과의 응용성, 유용성, 발전성이 큰가?

③ 연구, 기술 성과가 실무에서 사용될 가치가 있는가?

④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를 체계화하여 장래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가?

제5조. 심사판정

심사위원은 규정 4에 따른 심사내용과 현재까지의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을 참고하여 그 기준을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한다.

1. 게재가

원고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하여도 되는 경우.

2. 수정후게재가

(자구) 원고에 오타나 수정하여야 할 문맥이 있는 경우.

(내용) 수정사항이 경미하여 수정 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정후재검토

수정사항이 중요하거나 원고가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게재불가

원고가 논문집에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술노트로 권유

원고 내용이 '연구논문'보다 '기술노트'로 게재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 심사 기한

위촉된 심사위원이 심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회송하여야 한다. 기간 내에 심사결과가 발송되지 않을 시에는 제3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심사결과의 처리

1. 최초 심사

① 최초 심사서에서 2인 이상의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가" 판정을 받은 경우 최종 판정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에 회부한다.

- ② 최초 심사에서 2인 이상의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확정한다.
- ③ 그 외의 경우에는 투고자에 의하여 수정이 완료된 원고를 재심에 회부한다.

2. 수정과 재심

- ① 최초 심사에서 "수정후재검토"의 판정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원고 수정을 요청한다.
- ② 수정 요청을 받은 투고자는 심사자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원고를 수정하여야한다. 투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수정본과 답변서(편집위원회 지정양식)를 on-line 상으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송하지 않을 시에는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게재불가 처리한다.
- ③ 수정된 원고의 재심은 최초 심사자에게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재심까지에서 2인 이상의 "게재가" 혹은 "수정후게재가" 판정을 받은 경우 최종 판정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에 회부한다.
- ⑤ 재심까지에서 2인 이상의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확정한다.

3. 편집위원회의 심사종료확인

- ① 편집위원회는 3인 심사자의 심사판정 결과가 모두 접수되면 이를 확인하고 신속히 "심사종료확인"을 실시하여 논문투고자들에게 심사가 종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 ② 심사종료확인을 통지 받은 투고자는 심사자들의 심사평 및 심사결과에 따라 답변서와 수정본을 신속히 준비하여 on-line 상으로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최초 심사 및 재심 포함)에는 심사자의 수정요구사항에 대해 수정본에서 무엇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를 학회 지정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의 최종판정

- ① 편집위원회는 최초 심사 또는 재심에서 2인 이상의 "게재가" 판정을 받아 회부된 원고와 심사평 및 답변서를 검토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승인한다.
- ② 3인의 심사자 중 2인의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라 하더라도 1인의 "수정후재검토" 혹은 "게재불가(기술노트로 권유 포함)" 판정 사유가 심각하거나 투고자의 답변이 게재불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제 4의 심사자를 선임하여 심사하고 제 4 심사자가 게재불가 판정하는 경우 이를 제 5의 심사자인 편집위원회에서 종합 판단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최종판정을 위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원고의 내용과 심사평 및 답변서에 대하여 투고자 및 심사자에게 서면(또는 전자우편)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심사자와 투고자는 즉시 답변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답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5. 기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확정 처리한다.

- ① 투고자가 재심 요청을 받은 지 6개월이 경과하도록 수정원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② 투고자가 편집위원회의 질의를 받은 지 2개월이 경과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제8조. 이의제기

투고자는 상기 7.4절(편집위원회의 최종판정)의 ②항의 경우에 한정하여 심사 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1회에 한하여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 5의 심사자를 선임하여 그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기타

상기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의 협의하여 처리한다.